

임업수익의 전망

유 병 일 / 임업연구원 연구관

임업연구원에서는 산림청 발족('67) 직후인 70년대 초반부터 수종별 임업수익을 추정하여 왔는데, 이는 산림청이 20여년간 추진하여온 조림 및 육림등 산림사업을 국토녹화, 황폐지복구라는 단순녹화차원을 벗어나서, 미시적으로는 산주의 개별 경제 이익을 보장해주고 거시적으로는 국토면적의 66%를 차지하고 있는 산지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용을 얻고자하는 산림청의 경제정책의지를 대외적으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내고자하는 대표적인 연구사업이라 할 수 있다.

임업수익에 관한 그동안의 연구는 산림정책 특히 자원조성·관리정책에 따라 발전하여 왔는데 초기에 장기수의 인공조림정책이 강조되자 '71년에는 잣나무, 낙엽송, 삼나무 등의 인공조림수종을 대상으로 수익성분석이 이루어졌고, '77년부터는 장기수이외에 이태리포플러, 현사시, 오동나무, 밤나무, 호도나무등의 속성·유실수가 첨가되었으며, '80년대에 들어서 조림지의 구득난, 우량 천연림의 육림필요성의 강조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감속·상수리나무 등의 천연림에 대한 수익성이 함께 연구·분석됨에 따라 현재는 14개 주요수종(잣나무, 낙엽송, 삼나무, 편백, 리기테다소나무, 잣나무, 강송, 해송, 상수리나무, 이태리포플러, 현사시, 오동나무, 밤나무,

호도나무)에 대한 수익성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임업연구원에서 분석하는 수익성 분석자료는 한국 임업과 산림자원관리의 역사가 짧기때문에 수종별 경영모델이 완전히 확립되어있지 않은 관계로 산림청에서 사용하고있는 몇 수종의 몇가지 정부공정을 제외하고는 수종별로 대표적인 표본지를 선정하여 공정별 투입인력, 투입자재등을 조사·사용하고 있으며 벌기령, 재적, 주간벌목, 종실가격, 인건비 등의 지역별 차이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의 평균기준치

표 1 樹種別 調査因子 및 分析內容

| 調査因子 | 分析內容 |
|--|-------------------|
| 1. 伐期令 및 材積 | 1. 조수익 |
| 2. 主間伐木 및 種實價格 | 2. 정부보조총액 |
| 3. 資材費(묘목대, 무기질·유기질비료, 농약, 농구비, 포장비 등) | 3. 생산비 |
| 5. 地價 | 4. 순수익 |
| 작업인부 | 5. B/C율 |
| 5. 地價 | 6. 내부투자수익율(IRR) |
| 6. 作業別政府補助率 및 內容 | 7. 재무투자 수익율(FR R) |
| 7. 作業別工程(지촌, 식재, 시비, 하예, 만질, 약제살포, 천연림보육, 지타, 제벌, 보호관리, 간벌목선정, 수확) | 8. 소득율 |

를 사용하고 있기때문에 조사·분석기준에 따라 분석내용이 약간은 달라질 수 있는 약점도 있으나 임업경영의 현실과 추이 및 앞으로의 전망을 예측하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어 앞으로도 계속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국내 임업의 투자여건은 최근 6공화국에 들어서 개방정책과 북방정책의 강력한 추진결과 전국토의 임야가격 폭등, 농촌노동력의 구득난 및 임금의 급속한 상승, 임목·종실가격의 만성적인 정체현상, 외국의 값싼 임산물의 대량도입으로 그 전망이 그다지 낙관적이지만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수종별 수익여건은 초기부터 계속 하락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낙엽송, 편백, 이태리포플러, 밤나무 등의 대표적인 수종을 예로보면 '88년말 현재 장기수·유실수 모두 5%내외의 낮은 수익율로 하

락하고 있어 일반시중금리보다 낮은 상황이나 다행히도 이태리포플러는 10%이상의 수익율을 나타내고있다.

이와같은 추세는 실제 우리나라보다 빨리 선진화, 개방화가 이루어진 일본의 경우도 산림수익율의 하락은 피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었음을 감안할때 현재와 같은 조건(임목가의 정체, 높은 농산촌임금, 높은 임지가)이 계속 유지될 경우에는 더욱 수익율이 적어질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1년에 0.5%정도의 수익율 감소가 예측된다.

임산물의 경우 타농산물과 비교하여 일찍부터 수입개방을 하여온 결과 농림수산물 개방에 따라 커다란 피해는 없겠지만 일부 개방 금지되었던 유실수 계통의 품목, 특히 비교적 높은 수익율이 보장되고있는 호도나무등은 잣, 호도를 대체할 수 있는 품목이 대량 수입됨에따라 수익율의 하락

표2. 목재가의 변동(경상가격)

단위: %

| 년 도 | 소 나 무 | 낙 엽 송 | 참 나 무 | 비 고 |
|-------------------|----------------|----------------|----------------|--|
| '75-'89 (14년간) | 10.0 (3.7배) | 10.2 (3.9배) | 15.2 (7.2배) | 24,300원 / m ³ → 95,000원 / m ³ |

표3. 노임의 변동

단위: %

| 년 도 | 정부노임 | 현실노임 | 비 고 |
|-------------------|----------------|----------------|-----------------------------|
| '75-'89 (14년간) | 17.5 (9.6배) | 16.7 (8.7배) | 1,467원 / 일 → 12,703원 / 일 |

표4. 묘목가의 변동

단위: %

| 년 도 | 잣 나 무 | 낙 엽 송 | 리 기 다 | 비 고 |
|-------------------|----------------|----------------|----------------|---------------------|
| '74-'89 (14년간) | 12.3 (8.1배) | 15.2 (7.2배) | 15.9 (7.9배) | 6,772원 → 74,000원 |

표5. 임지가 변동

단위: %

| 년 도 | 임지가격 | 비 고 |
|-------------------|-----------------|------------------------|
| '72-'89 (17년간) | 17.0 (14.4배) | 90원 / 평 → 1300원 / 평 |

표6. 목재 생산비 변동

단위: %

| 년 도 | 생산비 | 비 고 |
|-------------------|------------------|---|
| '72-'88 (16년간) | 16.3% (11.2배) | 2,431원 / m ³ → 27,264원 / m ³ |

표7. 수익율의 변화 추세
(한국)

단위%

| 수종 | '72 | '77 | '80 | '81 | '82 | '85 | '88 |
|------------|------|------|------|------|------|------|------|
| 낙엽송 | 13.6 | 11.5 | 7.3 | 6.4 | 6.1 | 5.9 | 5.4 |
| 편백 | - | 13.3 | 8.1 | - | 5.7 | 5.1 | 4.9 |
| 밤나무 | - | 31.3 | 12.4 | 9.6 | 9.2 | 8.0 | 2.5 |
| 이태리 포플러 | - | 28.3 | - | 11.4 | 12.6 | 11.1 | 12.6 |

(일본)

단위: %

| 수종 | '61 | '71 | '81 |
|-----|-----|-----|-----|
| 삼나무 | 8.1 | 5.3 | 2.8 |

표8. 외국 수종별 수익율

| 국별 | 수종 | 별기령 | 내부투자 수익율 |
|------|----------|-----|-------------|
| 브라질 | 메리나 | 12 | 26.8% |
| 뉴질랜드 | 라디에타 소나무 | 27 | 14.2 |
| 미국 | 테다 소나무 | 35 | 13.1 |
| 일본 | 삼나무 | 60 | 2.5 |
| 서독 | 가문비나무 | 85 | 1.9 |
| | " | 120 | 1.2 |
| | " | 140 | 0.7 |

현상은 급격히 나타날 것이 전망된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아직은 완전히 선진국화되지는 않았고 별기령이 외국에 비하여 비교적 단기간이기 때문에 산림경영여건이 과거에 비하여 어려워졌지만 아직까지도 유리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날로 어려워지는 투자여건을 감안할 때 국가의 임업에 대한 직간접지원은 산림사업에 대한 보조정책을 강화시켜 계속 추진되어야만 할 것이며 실제 식재초년도에 필요한 자재대 중 묘목, 비료의 100% 보조와 인건비 중 지존작업(80%), 하예작업(60%), 천연림보육작업(60%) 등을 지원함에 따라 산주소득율은 보조가 없을 경우와 비교하여 2~3% 증대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와같은 정부보조액은 식재후 벌채시까지의 총생산비중 낙엽송, 삼나무, 편백의 경우 25%, 잣나무의 경우 10%, 기타 수종의 경우 5%에 해당하나, 타 산업에 비하여 공익성이 강조됨에 따라 산림사업과 재산권에 각종 제한이 뒤따르는 산림에 대하여는 국가가 발전하고 국가재정이 증대됨에 따라 산림사업에 대한 보조정책은 계속 증대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보조정책은 산림의 외부경제효과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어야만 가능하고 설혹 측정이 가능하더라도 산림의 공익기능이 시장경제를 통해 유통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중개자로서 정부의 절대적이며 주무부서인 산림청이 관련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조아래서만 산림소유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임업수익이 더욱 하락할 것이 예측되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생산자와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와 함께 산림자원을 활용한 환경·레크레이션 임업으로의 경영개선을 도모하면서 자신의 이익은 자신이 지켜야한다는 투철한 직업의식의 발휘가 어느때보다도 더욱 요망된다고 할 수 있다.★